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. 5. 15 선고 2018가단721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2019. 5. 1.

판결 선고2019. 5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65,157m²에 관하여,
가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1988. 6. 11. 접수 제38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나. 같은 등기소 1988. 6. 11. 접수 제388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

판사김순열

별지